

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 외 8인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,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4조)
-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,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,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, 실태조사 등(안 제5조~제9조)
- 기술창업기업 육성, 청년창업기업 육성 등(안 제10조~제12조)
- 전담부서 지정, 협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, 사무의 위탁, 포상(안 제13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 기업의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등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업의 전반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뿐 아니라 유망 기술 창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바, 효과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